

학과(부)장
학 인

불응시 성적인정 요청서

대학(부) : _____ 학과(부)/전공 : _____
 학 번 : _____ 성 명 : _____

본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금학기 (중간·기말)고사에 응시할 수 없어, 학칙 제45조 제2항 및 학사운영규정 제69조에 의하여 인정점수를 요청하고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본 불응시 성적인정 요청서를 제출합니다.

- 아 래 -

1. 요청 학 기 : 학년도 학기
2. 불 응 시 사 유 :
3. 사유발생년월일 :
4. 불 응 시 기 간 :
5. 불 응 시 과 목 : 전과목 () 일부과목 ()

학수번호	과목명	담당교수확인	학수번호	과목명	담당교수확인

20 년 월 일

신청자 : _____ ⑩

대 학(부) 장 귀 하

「학사운영 규정」

제69조(불응시 인정점수: 신고) ① 병역,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학생은 시험 개시 전에 그 사유를 소속 대학(학부)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신고하지 못한 학생은 그 사유가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.

제70조(불응시 인정점수: 제출서류) ① 불응시 인정점수 요청 사유 및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질병으로 인한 불응시: 본교 부속병원장 또는 그 밖의 종합병원장 발행의 진단서
 2. 군입대 및 그 밖에 병무소집으로 인한 불응시: 소집영장 사본
 3. 가족(배우자, 직계존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비속, 형제·자매에 한함)의 사망으로 인한 불응시: 부고(추후 사망진단서 사본 추가 제출).
 4. 국제경기, 연수 및 교육실습 등 파견으로 인한 불응시: 해당 증빙서류
 5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의 정도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불응시: 해당 증빙서류
-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는 중간 또는 기말시험 성적을 해당 학기 성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.
- ③ 불응시 인정점수를 위한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해당 교과목 성적을 부여하지 아니하며, 성적이 이미 확정된 경우 해당 성적을 취소한다.